학교법인 웅지학원

2025학년도 2차 이사회 회의록

이사정수	7인	재적이사	7인

1. 일시 : 2025년 03월 28일 15:40~16:30(회의소집 통보일 : 2025년 03월 20일)

2. 장소 : 네이버밴드 화상회의

3. 임원출석현황
   - ○ 참석 임원 (5인)
   - 이사(5인) : 임종하, 김기홍, 김정철, 김영권, 이용이
   - 감사(1인) : 하태우
   - ○ 불참 임원 (3인)
   - 이사(2인) : 김옥, 이인호
   - 감사(1인) :

     배석 : 송병곤 법인사무국 과장

4. 안건

   (1) 2026학년도 전문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 건 교육부제출
   - 2026학년도 입학정원 모집 유보계획

   (2) 교원 신규 채용 및 퇴직의 건

   (3) 정관개정(안) 및 제 규정 개정(안)

   (4) 2026학년도 정원외전형 글로벌경영학과 개설

   (5) 기타사항
   - 2025년 재임용 대상자(3명) 재임용 결과 보고
   - 2025년 8월 31일 임용기간 만료 재임용 대상자 9명 심사

<간서명>			

5. 회의 내용

이사장 임종하 : 회의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 이사정수 7명 중 재적이사 5명과 감사 1명 참석하여, 사립학교법 제17조 3항에 의거 회의가 개최되었음을 말하며, 참석하신 이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다.(사립학교법 제18조제2항, 정관 제28조제3항에 의거하여 원격영상회의로 이사회를 개최함) 송병곤 과장이 배석함을 말하다.

배석자 송병곤 : 사립학교 재정 진단의 권고에 의하면 458명 정원 감축을 해하여야 하지만, 학교 운영에 턱없이 모자란 정원이므로 웅지세무대학에서는 15% 감축하고, 309명을 유보하기로 하다.

이사장 임종하 : 교원 신규임용자 송○○, 송○○을 말하다.

전　　원 : 모두 확인 후 전원 동의함을 말하다.

이사장 임종하 : 다음은 정관 개정 사항으로 상급기관인 교육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항 관련한 신구조문대비표와 교원업적평가규정 및 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김기홍 : 교원업적평가규정, 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의 개정된 규정의 적용은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묻다.

배석자 송병곤 : 2025년 9월부터 적용한다고 말하다.

전　　원 : 모두 확인 후 찬성 5, 기권 1 동의함을 말하다.

배　석 송병곤 : 교원 퇴사 건을 보고하다.

이 사 김영권 : 이번 기회에 담당 교과목 교수진을 명확하게 다시 재정비를 하기를 부탁하다.

<간서명>			

배　석 송병곤 : 학교에 전달하겠다고 말하며, 다음은 2026학년도 정원외전형 글로벌경영학과 개설을 말하다.

이사장 임종하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 유학생을 선발하여 인재를 양성한다면 본 대학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다.

전　　원 : 동의함을 말하며, 전원 동의하다.

이사장 임종하 : 국제교육원 한국어 수강생 등록인원을 묻다.

배　석 송병곤 : 출입국에서 최종 비자 21명이 받았고, 수강생들은 오늘 입국한다고 말하다. 국제교육원 관련 업무는 대외협력처 산하에 두고 현재 직원들 중 3명을 인사 발령할 예정임을 말하다.

이사 김정철 : 국제교육원 한국어학당에 외국인 학생이 많아져 학교에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다.

이사장 임종하 : 대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외국인 학생 유치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말하며, 기타사항으로 다음 사항을 참고하길 말하다.

배　석 송병곤 : 2025년 재임용 대상자(3명) 재임용 결과 보고 김○○, 서○○, 지○○는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됨을 말하다.

전　　원 : 동의함을 말하며, 전원 동의하다.

<간서명>			

배 석 송병곤 : 2025년 8월 31일자 임용기간 만료 대상자 9명 재임용 심사 건을 보고하다.

이사장 임종하 : 마지막으로 이사님들의 다른 의견을 묻다.

전 원 : 없다고 말하다. 그리고 간서명자로 임종하 이사장, 김정철 이사, 김기홍 이사를 호선으로 추천하다.

이사장 임종하 : 전원동의로 임종하 이사장, 김정철 이사, 김기홍 이사를 간서명자로 의결하고 추가 논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한 후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하다.

2025. 03. 28. 16시 30분

위 사실을 확인함

학교법인 웅지학원 이사장 임종하 (서명)

이 사 김기홍 (서명)

이 사 김정철 (서명)

이 사 김영권 (서명)

이 사 이용이 (서명)

감 사 하태우 (서명)

<간서명> 임종하 김정철 김기홍

회의자료

(1) 2026학년도 전문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 건 교육부제출
  - 2026학년도 입학정원 모집 유보계획

(2) 교원 신규 채용 및 퇴직의 건

(3) 정관개정(안) 및 제 규정 개정(안)

(4) 2026학년도 정원외전형 글로벌경영학과 개설

(5) 기타사항
  - 2025년 재임용 대상자(3명) 재임용 결과 보고
  - 2025년 8월 31일 임용기간 만료 재임용 대상자 9명 심사

학교법인 웅지학원

▣ 학교법인 교원업적평가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h>사 유</th></tr>
<tr><td>제3조(평가영역 및 점수배점) ② 영역별 배점은 다음 표와 같고 세부점수는 업적평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02.07., 2014.11.07., 2015.07.17., 2016.02.17., 2016.02.30., 2017.07.11., 2022.06.23.>
<table><tr><th>구분</th><th>평가영역 및 항목</th><th>배점</th></tr><tr><td rowspan="3">정량평가</td><td>1. 교육영역</td><td>60</td></tr><tr><td>2. 연구영역</td><td>40</td></tr><tr><td>3. 기여도영역</td><td>별도 가산점수</td></tr><tr><td>합계</td><td></td><td>100점 + 가산점수</td></tr></table></td><td>제3조(평가영역 및 점수배점) ② 영역별 배점은 다음 표와 같고 세부점수는 업적평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02.07., 2014.11.07., 2015.07.17., 2016.02.17., 2016.02.30., 2017.07.11., 2022.06.23., 2025.03.25.>
<table><tr><th>구분</th><th>평가영역 및 항목</th><th>배점</th></tr><tr><td rowspan="4">정량평가</td><td>1. 교육영역</td><td>60</td></tr><tr><td>2. 연구영역</td><td>40</td></tr><tr><td>3. 기여도영역</td><td>별도 가산점수</td></tr><tr><td>4. 감점영역</td><td>별도 차감점수</td></tr><tr><td>합계</td><td></td><td>100점 + 가산점수 - 차감점수</td></tr></table></td><td rowspan="2">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원의 업적평가 및 인사관리를 위함</td></tr>
<tr><td>제4조(평가시기) ② 연구영역과 기여도영역은 임용기간 동안의 점수로 평가한다.</td><td>제4조(평가시기) ② 연구영역과 기여도영역 및 감점영역은 임용기간 동안의 점수로 평가한다. <개정 2025.03.25.></td></tr>
<tr><td colspan="3">부 칙 <13판 개정 2025.03.25.>
이 규정은 2025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td></tr>
</table>

▣ 학교법인 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 신·구 조문 대비표 ▣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h>사 유</th></tr>
<tr><td></td><td>제5조(감점영역) ① 감점영역은 교원징계 및 학교행정에 비협조적인 것을 말한다.
② 감점점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5.03.25.>
<table>
<tr><th>구분</th><th>항목</th><th>감점 배점</th></tr>
<tr><td rowspan="3">징계</td><td>1. 중징계(파면 해임)</td><td>(-)30</td></tr>
<tr><td>2. 경징계(정직,감봉)</td><td>(-)20</td></tr>
<tr><td>3. 경징계(견책)</td><td>(-) 5</td></tr>
<tr><td rowspan="2">학교 행정</td><td>1. 대학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 미참여</td><td>(-)15</td></tr>
<tr><td>2. 재임용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미서명</td><td>(-)30</td></tr>
</table></td><td>교원업적평가규정 개정에 따른 세부 규정임</td></tr>
</table>

부 칙 <8판 전면개정 2022.06.23.>

이 시행세칙은 2022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판 개정 2025.03.25., 시행 2025.09.01>

이 시행세칙은 2025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학교법인웅지학원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32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3.09.22.> 1. 부동산 및 주택 임대업 <개정 2023.09.23.> 2. 회계·세법연구소(A&T 연구소) <신설 2023.09.22.> 3. 기타 이사회에서 승인한 사항	제32조(수익사업의 종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삭제 2025.03.28.>~~ ~~3. <삭제 2025.03.28.>~~	상급기관 시정 요구 사항 수용
제39조(임용) ④ 제1항 이외의 교원 중 교수, 부교수, 조교수(연구지도교수 포함)의 임용은 교원인사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4.03.16., 2006.11.09., 2012.07.25., 2018.10.30., 2023.02.08., 2023.09.22., 2024.12.18>	제39조(임용) ④ 제1항 이외의 교원 중 조교수, 부교수,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이하 교수)의 임용은 교원인사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4.03.16., 2006.11.09., 2012.07.25., 2018.10.30., 2023.02.08., 2023.09.22.>	상급기관 시정 요구 사항 수용 개정 전으로 변경 함
제39조의2(교원의 계약제 임용)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단, 연구지도교수는 비정년트랙 임용계약서를 적용함 <개정 2012.07.25., 2024.12.18.>	제39조의2(교원의 계약제 임용) ①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12.07.25.>	상급기관 시정 요구 사항 수용 개정 전으로 변경 함
제39조의3(비전임교원) ① 총장은 명예교수, 석좌교수, 특임교수, 명예특임교수, 산학특임교수, 학연교수, 객원교수, 겸임교수, 강사 및 기타 별도로 정한 비전임교원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	제39조의3(비전임교원) ① 총장은 명예교수, 석좌교수, 특임교수, 명예특임교수, 산학특임교수, 학연교수, 객원교수, 연구교수, 겸임교수, 강사 및 기타 별도로 정한 비전임교원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상급기관 시정 요구 사항 수용 개정 전으로 변경 함

제73조(총장 등) ③ 학교법인이 설치하는 대학에 2인 이상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1인은 관련전문가로 임용할 수 있다. 부총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겸보하거나 또는 5급 이상의 사무직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2023.02.08., 2024.12.18.>	제73조(총장 등) ③ 학교법인이 설치하는 대학에 2인 이상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으로 겸보하거나 또는 5급(부참사) 이상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2023.02.08.>	상급기관 시정 요구 사항 수용 개정 전으로 변경 함
제74조(하부조직) ② 교학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또는 5급 이상의 사무직으로 보한다. 단 대외협력처장은 관련 전문가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02.08, 2012.04.20, 2012.07.25, 2015.01.05., 2016.05.18., 2024.12.18.>	제74조(하부조직) ② 교학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대외협력처장, 사무처장, 기획처장은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또는 5급(부참사) 이상의 사무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02.08., 2012.07.25., 2015.01.05., 2016.05.18.>	상급기관 시정 요구 사항 수용 개정 전으로 변경 함
제80조(청렴의무)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 종사자"라 한다)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09.22.>	제80조(청렴의무) 법인의 임직원 및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09.22., 2025.03.28.>	상급기관 시정 요구 사항 시정 함
제80조의2(행동강령) ① 제80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이하 "사학기관 행동강령"이라 한다)은 학교법인과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가.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제80조의2(행동강령) ① 제80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3.09.22., 2025.03.28.>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가.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상급기관 시정 요구 사항 시정함

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신고 대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사항 5. 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3.09.22.>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 (별표2) 삭제	(별표1) 법인 직원 정원 개정 안 (별표2) 대학 직원 정원 개정 안	상급기관 시정 요구 사항 시정함

부 칙 <30판-개정/ 2025. 03 28.>

본 규정은 2025년 0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현 행	
법인일반직정원	
총 계	7명
일반직계	6명
4급(참사)	1명
5급(부참사)	1명
6급(주사)	1명
7급(부주사)	1명
8급(서기)	1명
9급(부서기)	1명
기능직계	1명
10 등급계	1명
운전기사보	1명

개정(안)	
법인 직원 정원 <개정 2025.03.28.>	
총 계	**3명**
일반직계	3명

(별표2)

현 행

학교일반직정원

총 계	81인
일반직계	65인
2급(참 여)	2명
3급(부참여)	2명
4급(참사)	2명
5급(부참사)	6명
6급(주사)	8명
7급(부주사)	10명
8급(서기)	15명
9급(부서기)	20명
기술직계	2명
5급(사서부참사)	1명
9급(사 서 보)	1명
기능직계	14명
8등급계	2명
운전기사	2명
9등급계	6명
건축기사보	2명
전기기사보	2명
수도기사보	2명
10등급계	6명
경노무원	6명

개정(안)

대학 직원 정원 <개정 2025.03.28.>

총 계	**40명**
일반직계	**30명**
기능직계	**10명**